

發明獎勵를 위해 發明保護法을

本會 玉 文碩理事 이코노미스트誌 「나의」



本會 玉 文碩 理事(사진)는 지난 7月 5日字 發刊經濟專門誌 「이코노미스트」에 寄稿한 「나의 提言」을 통해 發明保護法에 대한 所信을 밝혔다.

이번 寄稿에서 玉 文碩理事는 「開發技術의 核心을 이루게될 새로운 發明·考案이 死藏되지 않고 그 特徵과 技術性을 살려나가려면 우선 企業에서 關心을 갖고 關聯技術을 사들이

거나 投資를 해야할 것인바 이를 위한 政府次元에서의 效果的인 誘引策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먼저 생각할수 있는 것은 지난 1958年에 制定 施行되다가 10年만에 租稅減免規制法의 대상에 둑여 그 實施를 보지 못하고 있는 發明保護法을 復活시킴으로써 企業의投資誘引效果를 거둘 수 있다」고 強調했다.

玉 文碩理事는 또 「發明品의 企業化를 통한 生產 및 輸出을 促進시키기 위해 國내에서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었던 發明保護法이 租減法과 관련되어 유명무실하게 오늘에 이르고 있는

우리 나라의 特許出願은 해마다 15%정도의 伸張率을 보여 지난해에는 技術開發과 관련이 깊은 특허와 실용신안이 무려 23,398건이 출원되고 4,725건이 登錄되었다.

이 실적은 内外國人分을 합친 것이기는 하나 이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이 내 특허나 실용신안을 얻은 것도 2,114건이나 된다.

특허청의 어려운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된 이와 같은 發明·考案들이 실제로 산업과 連繫되어 실용화되고 있는 것 보다 死藏된채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고 하겠다.

企業發明보다 個人發明의 출원 및 등록이 많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발명의 실용화 내지 기업화문제는 해를 거듭할 수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며 이제부터라도 정부나 관계기관 및 기업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과

제가 아닌가 싶다.

지난 82년에 종전의 특허협회를 발명특허협회로 개칭하여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企業化를 촉진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발명특허협회에서는 매년 1억 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으로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발명품 가운데 우수한 것을 선발하여 試作品을 제작해주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그것도 15건 정도 밖에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무역상담을 하려면 Buyer에게 샘플을 보이든지 送達하여 来去가 이루어지듯이 발명의 기업화에 있어서도 試作品은 샘플의 역할을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자금이 없어 시작품을 만드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음을 감

復活하자

提言」서 強調

것을 發明界 모두가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고前提하고 「發明은 特許된 內容만으로 生產이나 輸出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技術的 補完이나 市場需要에 맞는 開發投資를 위해서는 制度的인 Incentive가 되는 發明保護法을 現實에 맞게 改善補完하거나 特許法을 改正해서라도 본趣旨와 目的 및 效果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 運營의 妙를 기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發明保護法의 부활을 거듭 促求했다. 玉文碩理事의 寄稿內容을 紹介한다.

—編輯者 註—

안할 때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발명과 고안 가운데 우수한 것만이라도 기업화를 위한 지원이 다각도로 검토 돼야할 것이다.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지원기관으로 현재 한국技術開發(株), 한국개발투자(株), 한국기술금융(株),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 등이 있으나 冒險投資를 꺼려 개인발명가들이 이 기관들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담보력이 없는 개인보다 비교적 비용이 손쉬운 기업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하간 개발기술의 核心을 이루게 될 새로운 발명, 고안이 사장되지 않고 그 특징과 기술성을 살펴나가려면 우선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관련기술을 사들이거나 투자를 해야할 것인바 이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효과적인 誘引策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958년에 제정 시행되다가 10년만에 租稅減免規制法의 대상에 둑여 그 실시를 보지 못하고 있는 發明保護法을 復活시킴으로써 기업의 투자유인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겠다.

발명보호법은 그 목적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발명품의 생산 수출 및 보급을 장려하고 발명가를 보호육성하는데 있으며 受惠범위와 대상은 발명을 기업화하거나 특허권을 讓受 또는 실시하는 기업이나 개인이면 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수한 발명품의 생산 및 수출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고 정부가 지정한 품종에 대해서는 그 생산에 있어 그 당시의 영업세, 소득세 물품세를 3~5년동안 면제함은 물론 발명품을 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 그 국내수입의 관세까지도 면제해 왔다.

이와 같이 발명품의 기업화를 통한 생산 및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내에서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었던 발명보호법이 租減法과 관련되어 유명무실하게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을 발명계 모두가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발명은 특허된 내용만으로 생산이나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기술적 補完이나 시장수요에 맞는 개발투자를 관련기업이 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Incentive가 되는 발명보호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거나 특허법을 개정해서라도 본 취지와 목적 및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운영의 妙를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발명을創出하는 두뇌인력을 키워 기술축적을 해나감으로써 국제경쟁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며 따라서 발명장려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은 곧 技術立國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다. (※)